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nline Arbitration Rules in China

최 석 범*

Seok-Beom Choi

〈목 차〉

- I. 서 론
- II. 선행연구
- III.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의 주요내용
- IV.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의 특징과 시사점
- V. 결 론

주제어 : 중재, 온라인중재, 온라인중재규칙, 중국

* 2011년도 춘계중재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I. 서론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에서 그 시장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기존의 ADR도 온라인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온라인분쟁해결은 일반적으로 4개 분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대의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의 온라인분쟁해결센터(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er)가 주로 도메인명 분쟁, 일반주소분쟁, 전자거래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 1일에 CIETAC의 온라인 중재규칙(Online Arbitration Rules)이 발효되어 B2B전자상거래분쟁에 적용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전자상거래법률망(E-commerce Laws Nets)과 Beijing Deofar Consulting Co. Ltd가 설립한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가 정보교환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셋째, 내부고충메카니즘(Internal Complaint Mechanism)은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의 제공업자에 의해 설치된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불평과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넷째, 전자청원(online petitions)은 중국전자상회, 북경전자상무협회, 상해전자상무협회와 같은 많은 비영리기구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획기적인 시도가 바로 CIETAC의 온라인중재규칙의 제정과 도입이다. 이 온라인중재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는데 총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밀하게 작성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CIETAC의 온라인중재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온라인 중재규칙의 주요내용을 통한 온라인중재규칙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온라인중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

1. 중국의 중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오원석외 1인(2010)¹⁾의 연구에서는 중국 중재법과 중재제도의 특징과 중국중재의 사법감독 실태를 살펴보고, 사법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정용균(2010)²⁾

1) 오원석·김태경, “중국상사중재의 사법감독 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8, pp.91-130.

2)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

은 중국의 상사중재판정 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중국의 상사중재제도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석철(2008)³⁾은 중국 중재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 중재법과 UNCITRAL 모델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과 중국중재제도의 국제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문창해(2008)⁴⁾는 중국의 현행 중재절차와 관련 실행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하현수의 1인(2007)⁵⁾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제상사제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와 사법심사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충원의 1인(2007)⁶⁾은 중재기관선정과 관련한 사례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을 통하여 실제 중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재합의의 유효조건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의해야 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원(2005)⁷⁾은 중국의 중재법, 중국의 국제중재기관인 CIETAC의 중재규칙을 검토함으로써 그 법규칙들이 시사하는 유의점들을 도출하여 국내 무역실무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최석범(2004)⁸⁾은 중국의 법률체제와 중국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CIETAC의 분쟁처리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윤진기(2004)⁹⁾는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에서 보전신청 재정관한권에 관한 문제, 중재 전 보전신청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전신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Hu(2002)¹⁰⁾는 중국의 상사중재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1994년 제정 중국중재법과 국내중재, 국제중재를 다루면서 CIETAC과 그 업무를 소개하고 규명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3, pp.133-167.

- 3) 김석철,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12, pp.117-138.
- 4) 문창해, “중국의 중재절차에 대한 소개”, 『법학논총』, 제15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pp.167-177.
- 5) 하현수·윤충원,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pp.135-127.
- 6) 윤충원·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65-92.
- 7)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12, pp.113-137.
- 8) 최석범,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pp.135-172.
- 9)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2, pp.47-68.
- 10) Li Hu,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11th SOFTIC Symposium, Software Information Center, 2002.

2. 중국의 온라인중재에 관한 선행연구

현재 국내연구들 가운데 중국의 온라인중재를 다루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으며 특히, 2009년 5월 1일부터 중국의 온라인중재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

차경자의 1인(2010)¹¹⁾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현황을 CIETAC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온라인중재 시행에 따르는 법적 이슈를 연구하여 중국 중재제도 연구자들에게 최신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차경자(2008)¹²⁾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산하의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 조정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의 도메인분쟁해결제도를 유형별로 정리함으로써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있다.

우광명(2006)¹³⁾은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온라인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두고 CIETAC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센터의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장두채외 3인(2004)¹⁴⁾의 연구에서는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에 대한 중국의 판례와 아시아 도메인 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에 대한 사례와 관련 규정을 고찰해봄으로써 중국에서의 도메인네임과 상표권분쟁에 대한 최근 경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윤광운외 2인(2003)¹⁵⁾은 전자무역환경 하에서의 중국의 도메인네임분쟁의 유형과 판례 및 판례의 적용 법률을 고찰해봄으로써 소유권의 해석기준, 상표 또는 상호권의 침해여부, 부당경쟁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Hu(2002)¹⁶⁾는 중국의 CIETAC의 온라인 ADR실무를 도메인네임분쟁해결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온라인 ADR의 본질, CIETAC의 온라인 ADR을 CIETAC의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논하면서 그 주요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Hong(2003)¹⁷⁾은 중국에서의 온라인분쟁해결을 다루면서 온라인중재, 온라인조정 전망을 하면서 중국인터넷정보센터(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CNNIC) 도메인네임분쟁해결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11) 차경자·최성일,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CIETAC의 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08, pp.131-149.

12) 차경자,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CIETAC의 DNDRC 조정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pp.171-190.

13) 우광명,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실행과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6.09, pp.237-257.

14) 장두채·손성문·김재승·김경배,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연구-중국의 도메인네임과 상표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1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pp.219-241.

15) 윤광운·김철호·손성문,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사례연구”,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pp.215-235.

16) Li Hu, “CIETAC Online ADR Practic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System,” 11th SOFTIC Symposium, Software Information Center, 2002.

17) Xue Hong,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China,” *Proceedings of the UNECE Forum on DOR 2003*, 2003.

3. ODR에 관한 선행연구

양재훈과 최석범(2007)¹⁸⁾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방안과 관련하여 ODR에 초점을 맞추어 그 유형들과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ODR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김상찬과 이충은(2010)¹⁹⁾은 ODR의 개념, 유형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선광 외 2인은(2005)²⁰⁾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 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 시험·운영사례를 통하여 ODR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온라인 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병욱(2003)²¹⁾은 국제상사문제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중국적이며 구속적인 중재와 연관성을 갖는 온라인중재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영찬(2006)²²⁾은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분쟁발생에 대비하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찬(2007)²³⁾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온라인 ADR의 실제운영상태를 살펴본 후 온라인 ADR의 한계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강성모(2008)²⁴⁾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ODR서비스기관들을 통하여 국내의 ODR의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광(2009)²⁵⁾은 온라인 중재가 특정요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현재의 법적 체제하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고,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중재계약, 절차, 판정의 법적 허용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김선광(2011)²⁶⁾은 온라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으로서 시청각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
- 18) 양재훈·최석범, “우리나라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12.31, pp.311-328.
- 19) 김상찬·이충은, “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3.2, pp.67-85.
- 20) 김선광·김종락·홍성규,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모델 구축방안”,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8.1, pp.3-35.
- 21) 유병욱, “온라인분쟁해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2, pp.191-223.
- 22) 이영찬, “온라인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4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6.5.31, pp.73-93.
- 23) 이영찬·김영성·강동준,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7.5.31, pp.43-61.
- 24) 강성모·양재훈·김태환·한상훈·유민영,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31, pp.91-120.
- 25) 김선광, “현 법적 체제하에서의 온라인 중재의 허용성”,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5.31, pp.113-133.
- 26) 김선광, “온라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에 관한 소고”,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1.5.31, pp.113-133.

Ⅲ.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의 주요내용

1. 온라인중재규칙의 제정목적과 용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CIETAC) 온라인중재규칙은 온라인 방식으로 계약 또는 비계약적 성질을 갖는 경제무역 등 분쟁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CIETAC에 의해 2009년 1월 8일 통과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온라인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중재위원회, 서면형식, 온라인 조정 등 온라인중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 1> 온라인중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중재위원회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지칭하며 중국 국제상회중재원이라는 명칭을 병용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 국제상회로부터 2005년 1월 11일 수정 및 통과된 규칙,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과 그 이후의 수정분을 지칭
중재위원회 중재인명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중재인명부 및 그 이후의 수정분을 지칭
중재위원회 온라인분쟁해결센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하위조직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 전자상거래 분쟁 등을 해결하는 전문화된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를 지칭
중재위원회 온라인분쟁해결센터 웹사이트	중재위원회 온라인분쟁해결센터가 설립한 온라인분쟁해결 전문사이트 www.cietacodr.org
서면형식	그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하거나 이후의 참조를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신 및 데이터메시지(전보, 텔렉스, 팩스, EDI 및 email 등)와 같은 정보기록형식을 지칭
전자증거	전자적, 광학적, 자기적 혹은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 발신, 수신 혹은 저장된 데이터메시지를 지칭
전자서명	서명자의 신분식별에 사용되거나 서명자가 데이터메시지의 내용을 승인한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메시지 내에 또는 첨부되어 있는 전자양식으로 된 자료
온라인 구두심리	동영상 회의 및 기타 전자적 혹은 컴퓨터 통신형식을 통한 인터넷 기반의 구두심리를 지칭
온라인 조정	동영상 회의 및 기타 전자적 또는 컴퓨터 통신형식을 통한 인터넷 기반의 조정을 지칭

2. 온라인중재규칙의 적용과 중재합의

(1) 온라인중재규칙의 적용

분쟁의 양 당사자가 온라인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중재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의해 접수된 어떤 분쟁에도 적용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본 규칙의 적용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CIETAC의 중재규칙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규칙을 적용한다.²⁷⁾ 또한 당사자가 온라인중재규칙의 관련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실행가능하고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러한 합의가 우선하고²⁸⁾, 온라인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재기구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회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²⁹⁾ CIETAC의 중재규칙과 동일으로 규정되어 있다.³⁰⁾

(2) 중재합의

온라인중재규칙에서는 중재규칙에서와 같이 중재합의를 당사자간에 또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이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어떤 다른 양식의 서면합의로 정의하고 있고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서면에 계약서, 서신,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EDI 또는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³¹⁾ 온라인중재규칙이나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합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중재법에서는 ①중재청구의 의사표시, ②중재사항, ③선정한 중재위원회 등의 내용을 구비하여야만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있다.³²⁾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서 중재법과 중재규칙에서는 모두 계약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중재합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표 2>에서와 같이 중재법보다 중재규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중재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재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2> 중재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약의 변경사항

법규	내용
중재법 제19조	변경·해제·해지 또는 무효
중재규칙 제5조	변경·해지·종료·양도·실효·무효·효력 미발생·취소 및 성립여부
온라인중재규칙	규정없음(중재규칙 제5조 적용)

27)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조.

28)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4조.

29)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5조.

30) CIETAC 중재규칙 제4조.

31)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6조.

32) 중국 중재법 제16조.

3. 문서의 제출, 발송 및 전송

온라인중재규칙에서 중재위원회의 사무국은 중재와 관련된 모든 문서, 통지, 서면자료 등을 당사자나 혹은 대리인에게 발송하며, 양 당사자는 중재신청, 답변, 서면진술, 증거 및 기타 중재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서의 발송 및 제출방법으로는 email, EDI, 팩스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보조적으로 상용우편, 택배, 퀵서비스 혹은 기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³³⁾

문서의 제출 또는 발송시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는 한 당사자에게 문서를 발송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복사본을 발송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 또는 대리인이 중재판정부의 구성원과 일방적인 연락을 해서는 안되며 사무국을 통하여야 한다. 문서의 발송자는 발송의 사실과 정황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문서를 발송한 자가 문서의 불착을 통지받거나 자신이 문서가 성공적으로 발송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재위원회 사무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³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모든 서면통신은 관련당사자에 의해 명시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사무국은 인터넷, 팩시밀리, 우편 또는 특송서비스, 기타 유효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⁵⁾

문서의 수신여부와 관련해서는 <표 3>과 같이 발송방법에 따라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수취인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³⁶⁾

<표 3> 발송방법에 따른 수신의 기준

방법	내용	
인터넷을 통한 전자방식	수취인이 특정한 시스템을 지정하였을 경우	특정한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
	수취인이 특정한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수취인의 임의의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
팩스형식	발송확인서에 나타난 일자	
우편 혹은 특송의 방식	기록된 일자	
기타 유효한 방식	수취인이 실제로 수취하거나 수취하였어야 할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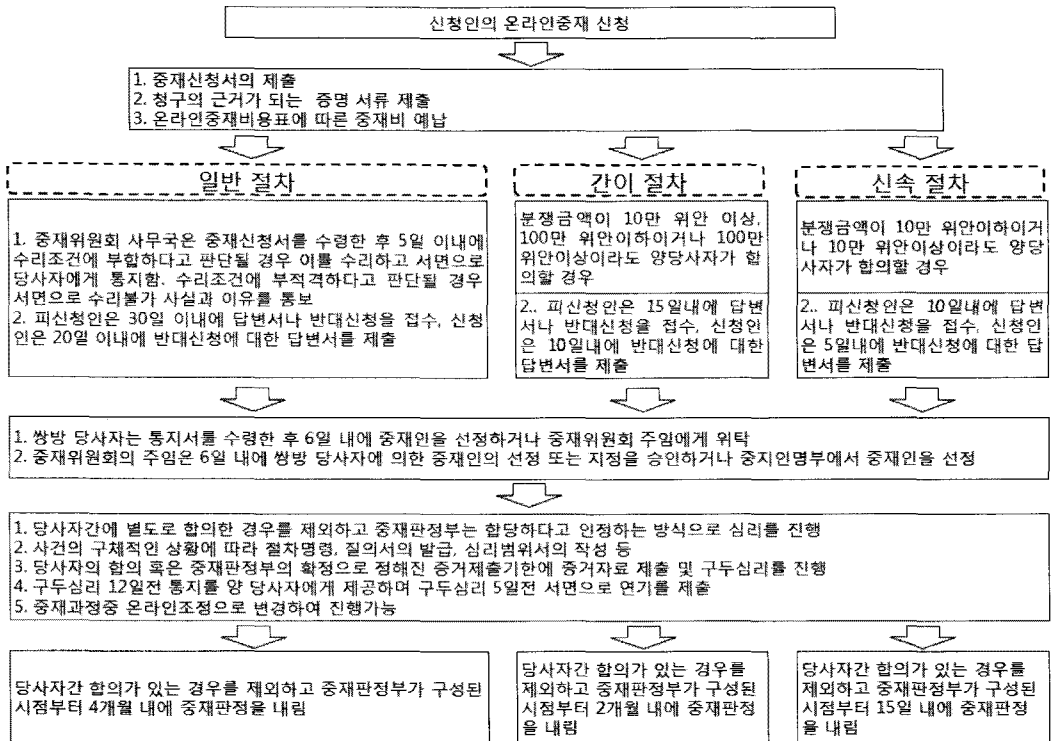
33)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0조.
 34)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1조.
 35)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2조.
 36)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3조.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중재판정부 그리고 중재위원회간 안전 데이터의 안전한 온라인 전송을 보장하고 자료의 암호화를 통하여 안전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³⁷⁾ 중재과정 중 온라인으로 전송된 데이터의 인터넷 시스템 고장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정보를 획득하여 손해를 초래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³⁸⁾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4. 온라인중재의 절차

온라인중재규칙상 온라인중재의 절차는 기존의 중재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반절차와 간이절차에 신속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였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중재절차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온라인중재신청의 일반절차와 간이절차, 신속절차의 흐름표



자료: 최석범,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p.157을 근거로 온라인중재규칙에 맞게 재구성함.

37)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5조.

38)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6조.

(1) 온라인중재의 신청

온라인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CIETAC의 온라인분쟁해결센터 웹사이트에 있는 중재신청서 양식과 중재신청서 작성지침(Arbitration Application Filing Guide)의 요건에 맞게 작성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 및/혹은 대리인의 서명 및/혹은 도장 날인을 포함한 중재신청서와 사실증명서류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중재 안전중재비용표에 따라 중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³⁹⁾

중재신청서의 세부 기재내용은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및 기타 전자통신수단, ②신청인이 지정한 통신수단, ③중재 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에 대한 언급, ④중재청구, ⑤사건의 경위와 분쟁의 요점, ⑥중재신청의 근거 사실과 이유 등이다.

중재위원회의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중재신청의 수리를 판단하여 적격할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부적격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수리불가사실과 이유를 통지한다.⁴⁰⁾ 그리고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신청인/피신청인에게 수리된 안전의 중재통지를 보낼 때에는 온라인으로 본 온라인중재규칙, CIETAC의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사무국은 본 온라인중재규칙, CIETAC의 중재규칙, 중재인명부의 사본을 중재통지서에 첨부할 수도 있다.⁴¹⁾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은 30일 내에(간이절차 15일, 신속절차 10일) 반대신청을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에 ①피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및 기타 전자통신수단, ②피신청인이 지정한 통신수단, ③근거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④답변의 근거나 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⁴²⁾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반대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내에(간이절차 10일, 신속절차 5일) 중재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의 구성

신청인의 신청과 피신청인의 답변으로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중재심리와 판정을 위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중재판정부는 사안에 따라 1인 혹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39)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8조.

40)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19조.

41)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20조.

42)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21조.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본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인의 선정은 당사자가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합의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합의하여 지정한 자를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중재인명부에서 선정을 하게 된다.⁴³⁾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최후에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일방이 수령후 6일 이내에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각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6일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고 수석중재인은 최후에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일방이 수령후 6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선정을 위탁한 1인이 되며,⁴⁴⁾ 중재인으로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은 성명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중재위원회에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정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⁴⁵⁾

(3) 온라인중재의 심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진술 및 변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⁴⁶⁾ 기존의 중재규칙과는 달리 온라인중재규칙에서는 전자증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는 전자적, 광학적, 자기적 또는 다른 유사한 수단에 의해 생성, 발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전자증거일 수도 있으며 전자증거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⁷⁾

- 데이터메시지를 생성, 저장, 혹은 전송하는데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
- 데이터메시지 내용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
- 데이터메시지의 송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
- 기타 관련요인

신뢰할만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증거는 육필서명이나 인장날인이 있는 증거와 같이 동일한 허용력과 증명력을 가진다. 증거제출기한이 정해지면 그 기한내에 중재판정부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서면진술 또는 증거자료의 접수를 거부

43)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25조.

44)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27조.

45)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26조.

46)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28조.

47)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29조.

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독자적인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⁴⁸⁾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물류배송회사 그리고 지급은행 등으로부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사안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증거는 중재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하여 양측 당사자에게 제공되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⁴⁹⁾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와 증거만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으나,⁵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구두심리는 온라인 구두심리로 이루어지는데 화상회의 및 기타 전자적 혹은 컴퓨터 통신의 수단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안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상적인 대면구두심리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중재규칙에서 심리에 관한 통지를 20일전에 하는 것⁵¹⁾과 달리 온라인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는 심리 12일 전에 심리에 관한 통지를 양당사자에게 발송하며,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심리전 5일까지 서면형식으로 연기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의 가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게 된다.⁵²⁾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의 요구 혹은 동의를 통해서 심리중인 안전에 대해 온라인조정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규칙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온라인중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⁵³⁾

(4) 온라인중재의 판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부터 4개월 내에(간이절차 2개월, 신속절차 15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중재위원회 주임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⁵⁴⁾

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판정이 결정된 일시와 중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중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고 중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날인하기 전에 검토를 위해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독립적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중재위원회는 판정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재인에게 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다.⁵⁵⁾

48)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0조.

49)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1조.

50)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2조.

51) CIETAC 중재규칙 제29조.

52)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4조.

53)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7조, CIETAC 중재규칙 제40조.

54)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8조.

55)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제39-40조.

IV.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의 특징과 시사점

1.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의 특징

(1) 온라인중재에 대한 세밀한 배려 부재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은 온라인중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보다는 일반중재규칙을 가져오면서 특수한 내용만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중재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세밀하게 규정되기 보다는 일반론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정의 대부분이 일반중재규칙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온라인중재시스템 등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온라인 중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2) 사무국을 통한 의사소통

온라인규칙상 명시적으로 일방 또는 그의 대리인은 일방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의 모든 의사소통은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중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중재판정과 절차에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될 수 있다.

(3) 문서의 전송에 다양한 방법 채용

온라인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의 답변서, 증거, CIETAC 사무국으로부터의 통지를 비롯하여 문서의 전자적 제시를 규정하고 있고 문서 전달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당사자들과 사무국에서의 문서 제출과 전송이 우편, 택배 등 기타 전통방식이 사안의 상황에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email, EDI, 팩스 등이 기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전자증거에 대한 신뢰성 판단기준 제시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허용력, 관련성, 실질성 및 증명력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중재규칙에서는 온라인중재와 관련하여 특히 전자증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로서 전자적, 광학적, 자기적 또는 다른 유사한 수단에 의해 생성, 발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전자증거를 허용하고 있는 전자증거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4가지 고려요건 즉, ①데이터메시지를 생성, 저장, 혹은 전송하는데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 ②데이터메시지 내용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 ③데이터메시지의 송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 ④기타 관련요인

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데이터통신의 안전과 암호화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상당한 노력의무

당사자들, 중재판정부 그리고 위원회간에 사건자료의 전송에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자료의 암호화를 통해서 사건정보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재과정중 인터넷시스템의 고장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정보를 획득하여 손해가 유발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면책을 또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6) 중재판정부에 대한 사실조사권 부여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 물류배송회사 그리고 지급은행 등으로부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사안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집된 증거는 중재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하여 양당사자에게 제공되어 양당사자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요청받은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온라인중재절차

중국의 온라인중재규칙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온라인중재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중재절차를 일반절차, 간이절차, 신속절차로 구분하여 절차별로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8) 중재판정문의 작성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개입여지

중국의 온라인중재규칙상 CIETAC에 중재인이 서명하기 전에 검토를 위해 판정문의 초안을 CIETAC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CIETAC이 판정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CIETAC이 간접적으로 판정문 작성에 개입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독립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의 시사점

(1) 한국에서의 온라인 중재규칙의 제정

한국에서는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법이 마련되어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상사분쟁이 중재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온라인중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제도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온라인중재규칙을 검토하여 온라인중재에만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온라인 중재시스템의 개발

중국의 온라인중재규칙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중재절차와 같이 일반절차, 간이절차, 신속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온라인 중재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중재시스템도 온라인 ADR시스템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분쟁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는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들도 준비하여 왔는데 중국에서 2009년에 도입된 온라인중재규칙은 한국이나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중국에서 도입된 온라인중재규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온라인중재에 대한 보다 세밀한 배려가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규정의 대부분이 중국의 중재규칙의 내용을 복습하고 있고 온라인중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무국을 통한 의사소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 온라인중재판정과 온라인중재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사무국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문서의 전송에 전자적 수단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또한 있다. 넷째, 전자증거에 대한 신뢰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중재위원회에 데이터통신의 안전과 암호화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인터넷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제3자의 정보획득에 대해서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중재판정부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조사 요청을 받은 당사자들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온라인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CIETAC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온라인중재규칙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중재에 적합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재규칙과

의 공통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온라인중재에 한정되는 내용만을 다루는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온라인중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온라인중재규칙과 같이 일반절차, 신속절차, 간이절차 등으로 다양한 온라인중재절차에 입각한 다양한 온라인중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중재시스템은 온라인 ADR시스템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분쟁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성모·양재훈·김태환·한상훈·유민영,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31.
- 김상찬·이충은, “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3.2.
- 김석철,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12.
- 김선광, “현 법적 체제하에서의 온라인 중재의 허용성”,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5.31.
- 김선광, “온라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에 관한 소고”,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1.5.31.
- 김선광·김종락·홍성규,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모델 구축방안”,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8.1.
- 문창해, “중국의 중재절차에 대한 소개”, 「법학논총」, 제15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양재훈·최석범, “우리나라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12.31.
- 오원석·김태경, “중국상사중재의 사법감독 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8.
- 우광명,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실행과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6.09.
- 유병욱, “온라인분쟁해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2.

- 윤광윤·김철호·손성문,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사례연구”,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2.
- 윤충원·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 이영찬, “온라인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4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6.5.31.
- 이영찬·김영성·강동준,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7.5.31.
-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12.
- 장두채·손성문·김재승·김경배,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연구-중국의 도메인네임과 상표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1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3.
- 차경자,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CIETAC의 DNDRC 조정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 차경자·최성일,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CIETAC의 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08.
- 최석범,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 하현수·윤충원,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 Hong, Xue,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China,” *Proceedings of the UNECE Forum on DOR 2003*, 2003.
- Hu, Li, “CIETAC Online ADR Practic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System,” 11th SOFTIC Symposium, Software Information Center, 2002.
- Hu Li,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11th SOFTIC Symposium, Software Information Center,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Online Arbitration Rules in China

Seok-Beom Choi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released online arbitration rules which apply the resolution of disputes ov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s well as other economic and trade disputes in which the parties agree to d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may be electronic evidence cre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magnetic means. Electronic evidence with a reliable electronic signature shall carry the same effect and probative force as a document with a hand-written signature.

Where a case is tried in a tribunal,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conduct an online trial hearing using internet video conference or other electronic or computer communication means. Unless the parties have another agreement, summary procedure shall apply to cases where the amount in dispute exceeds RMB 100,000 but no more than RMB 1 million, or where the amount in dispute exceeds RMB 1 million and a party submits a written application for summary procedure after obtaining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fast-track procedure shall apply to cases where the amount in dispute does not exceed RMB 100,000 or where the amount in dispute exceeds RMB 100,000 and a party submits a written application for fast-track procedure after obtaining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Notable features of the Online Rul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t detailed consideration for online arbitration. Second,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ribunal are allowed only through the Secretariat. Third, elaborate provisions regarding the electronic submission and transmission of documents is provided for. Forth, various factors must be considered by the tribunal in deciding the evidence's reliability. Fifth, reasonable endeavours is levied on CIETAC to keep data communications secure and encrypted. Sixth, the tribunal has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collect relevant evidence. And finally different procedures are provided for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E-commerce.

Key Words : Arbitration, Online Arbitration, Online Arbitration Rules, China